

청운학원 정관

1991. 03. 19	부분개정	2015. 12. 01	부분개정
1994. 04. 12	부분개정	2016. 01. 01	부분개정
1996. 06. 17	부분개정	2016. 06. 01	부분개정
1997. 11. 03	부분개정	2016. 08. 01	부분개정
1998. 05. 01	부분개정	2016. 12. 01	부분개정
1999. 01. 20	부분개정	2017. 01. 25	부분개정
1999. 08. 21	부분개정	2017. 11. 24	부분개정
2000. 04. 17	부분개정	2018. 06. 29	부분개정
2008. 09. 25	부분개정	2018. 11. 02	부분개정
2009. 02. 27	부분개정	2019. 07. 18	부분개정
2009. 08. 14	부분개정	2019. 09. 20	부분개정
2010. 11. 22	부분개정	2020. 06. 01	부분개정
2011. 12. 30	부분개정	2021. 01. 29	부분개정
2012. 03. 23	부분개정	2021. 04. 30	부분개정
2012. 07. 22	부분개정	2021. 06. 15	부분개정
2012. 09. 01	부분개정	2022. 02. 03	부분개정
2013. 04. 26	부분개정	2022. 08. 12	부분개정
2013. 09. 26	부분개정	2023. 02. 08	부분개정
2014. 03. 01	부분개정	2023. 02. 23	부분개정
2014. 05. 01	부분개정	2023. 06. 05	부분개정
2014. 10. 01	부분개정	2024. 01. 09	부분개정
2015. 08. 04	부분개정	2024. 02. 19	부분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사회발전에 필요로 하는 전문직업인 양성 및 유치원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청운학원 (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대전보건전문대학 (교명은 대전보건대학교이라 한다)<개정 2012.03.23>
2. 대전보건전문대학 부속유치원(교명은 대전보건대학 부속유치원이라 한다)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21에 둔다<개정 2011.12.30>

제5조(정관의 변경) ①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한다.<개정 08.2.18, 09.02.27, 12.09.01, 22.08.12.>

②보고한 정관에 대하여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관할청에 보고한다.<신설 22.08.12.>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08.2.18>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개정 2008.2.18>

②법인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개정 2008.2.18>

③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개정 2008.2.18., 2021.01.29.>

④제3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1.01.29.>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 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2(예·결산보고및공시)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18>

②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18>

[본조신설 2007.3.29.]

제12조의3(기금운용심의회 설치등) ①학교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②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1.01.29., 22.02.03.>

1.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직원 및 재학생
2.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③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는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준용한다.<본항신설 22.02.03.>

[본조신설 2018.06.29.]

12조의4(기금운용심의회 구성)①학교법인의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②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은 교원, 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정관 12조의3제2항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 또는 위험관리·평가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 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 한 사람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 나.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학문 분야를 연

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 의 위원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 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 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 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06.29.]

제3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 <삭제2007.3.29>

제13조 <삭 제>

제14조 <삭 제>

제15조 <삭 제>

제16조 <삭 제>

제17조 <삭 제>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07.3.29.>

1. 이사 11인(이사장 1인 및 개방 이사 3인을 포함한다.)<개정 15.12.01., 16.06.01., 16.08.01., 24.02.19.>

2. 감사 2인(추천감사 1인을 포함 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개정 2007.3.29, 2008.2.18>

1. 이사 4년

2. 감사 3년 다만,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14.10.01.>

②삭 제 <2007.3.29>

제20조(임원의 선임 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②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7.3.29, 2008.2.18>

1. 사립학교법 및 이 정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사임서를 제출할 때
 3. 관할청의 해임요구가 있을 때
 4.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한 이 법인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한 때<본호신설 2007.3.29>
 5. 이 법인의 설립이념 및 건학이념을 변경하거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 추진사업을 반대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을 지도·선동했을 때 <본호신설 2007.3.29>
 6.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했을 때 <본호신설 2007.3.29.>
-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8>
- ④삭 제 <2007.3.29.>
- ⑤임기 중의 임원의 해임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로 한다. <본호신설 2017.01.25.>

제20조의2(개방이사의 자격)이 법인의 설립목적과 대학교의 교육목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회활동 경력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본조신설 07.3.29., 전문개정 2021.01.29.]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제20조의3(개방이사의 정수) 이사 정수의 4분의 1로 한다. [본조신설 2007.3.29]

제20조의4(개방이사의 선임)①개방이사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가 2배수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개정 2008.2.18>

- ②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2.18>
- ③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0조의 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2.18>
- ④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개정 2008.2.18>
- ⑤<삭 제> <2008.2.18>

[본조신설 2007.3.29]

제20조의5(개방이사의 추천위원회)①추천위원회는 대전보건대학 대학평의회에 둔다.

②추천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 3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 2인

③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2.18]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07.3.29>

②이사회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7.3.29, 2008.2.18>

③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1.01.29.]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④감사와 감사 또는 감사와 이사는 서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어서는 아니 된다.

⑤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명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⑥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항신설 2007.3.29>

⑦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명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본항신설 2007.3.29.>

1. 「사립학교법」 제20조2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개정 22.02.03.>
2.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개정 22.02.03.>
3.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한 자 <개정 22.02.03.>

⑨이 법인의 건학이념 및 교육목표에 동의하지 않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본항신설 2007.3.29.>

제21조의2(관할청의 임원취임 승인취소)

①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상,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4. 관할청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개정 22.02.03.>

②제1항에 따른 취임 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 부정, 횡령, 뇌물 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임원이 학교법인 및 학교의 회계 등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제1항,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해당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10퍼센트 이상(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2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회계부정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3.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 횡령·배임하거나 교직원 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③관할청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1.01.29.]

제21조의3(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22.02.03.]

제21조의4(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학교법인의 임원이 제21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임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02.03.]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삭제 <2005.8.30>

제22조의2(상근 임원) ①이사회에 1인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이사 재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형사, 행정상 제소등을 받은 경우 법인에서 주도적으로 대처하며, 그 제소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영(변호사 선임비용 포함)은 법인에서 부담한다. 단,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는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4.01.09., 24.02.19.>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8.2.18>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①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본항신설 2007.3.29, 개정 2008.2.18>

②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7.3.29>

③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3.29>

제26조의2(고문 등) ①법인에 상담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이사장, 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고문 등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2.18]

제2절 이사회

제27조(이사회 의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자체 내규 제정 <본호신설 2023.06.05.>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개정 2007.3.29>

②이사회 의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7.3.29, 2008.2.18>

제29조(이사회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 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이사회는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2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3.29, 개정 08.2.18., 21.01.29.>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8.2.18>

제31조(이사회 소집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8>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3.29>

제3절 대학평의회

제31조의2(대학평의원의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회(이하 "평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본조신설 2007.3.29]

제31조의3(평의원의구성) ①평의회는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대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8.02.18, 09.02.27, 12.03.23, 16.06.01., 21.01.29.>

1. 교원 3인
2. 직원 3인(조교 대표 1인 포함)
3. 학생 1인
4.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4인

②평의원의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3.29]

제31조의4(평의원의임기) ①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학생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08.2.18>

②평의원에 위촉된 자가 임기 중 그 자격이 상실될 경우 해촉되며,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3.29]

제31조의5(평의원의의장등) ①평의원의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개정 2008.2.18>

③의장은 평의원을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2007.3.29]

제31조의6(평의원의소집) ①평의회는 이사장, 학교의 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08.02.18, 12.03.23, 16.06.01.>

②대학평의회의 정기회의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를 원칙으로 한다.

③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와 회의의 안전을 정하여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이 그 소집을 요구할 때 이를 소집한다. [본조신설 07.3.29]<개정 12.03.23., 16.06.01.>

제31조의7(평의원의기능) 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개정 2008.2.18>

1. 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2.03.23>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교의 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2.03.23>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2.03.23>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본호신설 2008.2.18>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개정 12.03.23, 16.06.01., 21.01.29>

[본조신설 2007.3.29]

제31조의8(운영규정) 평의원회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07.3.29]<개정 12.03.23, 16.06.01.>

제4장 수익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개정 2008.9.25>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직영하는 것보다 유익하다고 인정될 때는 타에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8.2.18, 2008.9.25>

1. 영농사업
2. 투자사업
3. 부동산업
4. 사회서비스업
5.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사업 <본호신설 2008.9.25>
6. <본호신설 2008.2.18, 삭제2014.10.01>
6. 의료기기 도매업 및 도·소매업<본호신설 2012.09.01., 개정 2014.10.01>
7. 건물종합관리용역업<본호신설 2014.05.01., 개정 2014.10.01>
8. 음식점업<본호신설 2014.05.01., 개정 2014.10.01>
9. 서비스업<본호신설 2014.10.01>
10. 제1호 내지 제9호 관련 일체의 부대사업<본호 신설 2014.05.01.>
11. 제조업(커피가공업)<본호 신설 2023.02.08.>

제32조의2(사회복지사업) 법인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9.25]

제33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경영한다.

1. 삭제<삭제 2015.08.04.>
2. 우남빌딩사업소
3. 청운노인요양원 <본호신설 2008.9.25>
4. 삭제 <본호신설 2008.9.25><삭제 2012.09.01>
5. 청운상사 <본호신설 2012.09.01>

제34조(수익사업의 주소) 제33조의 사업장의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30>

1. 삭제<삭제 2015.08.04.>
2. 우남빌딩사업소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99
3. 청운상사사업소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99<본호신설 2012.09.01, 개정 14.10.01., 20.06.01>

제35조(관리인) ① 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08.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개정 2014.10.01>

제5장 해산

제3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2.18, 2009.2.27>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단체 또는 자에게 귀속된다.<개정 2008.2.18, 2009. 2.27>

제37조의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①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폐쇄된 학교에 관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소속 임원, 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는 학적부, 조직·회계·예산 관련 자료 등 사립학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
2.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 폐지의 인가를 받은 학교
3.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 폐쇄의 명령을 받은 학교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01.29.]

제38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09.2.27>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명

제39조(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또한 학교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07.03.29, 08.02.18, 12.03.23, 16.06.01., 21.01.29.>

② 학교의 장 이외의 전임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단, 강사의 임용, 신분보장 등 강사 관련 제반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며, 의원면직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면직할 수 있다. <개정 08.2.18, 19.07.18., 21.01.29.>

③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동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단, 의원면직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08.02.18, 09.02.27, 11.12.30, 16.06.01.>

④대학교육기관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개정 08.02.18, 12.03.23, 13.09.26, 14.10.01., 16.06.01.>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동조 제1항과 같이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사람인 경우 학교의 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학교의 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8.11.02.>

제39조의2(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①정관 제39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개정 08.2.18, 19.07.18>

1. 근무기간

가. 교 수 : 정관 제47조에 규정하는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 교 수 : 6년의 기간 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 교 수 : 6년의 기간 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개정 16.08.01>

라. 삭제<2012.07.22.>

마. 강사, 비전임교원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신설 19.07.18>

2. 급 여 : 업무의 곤란도, 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사항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및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본호신설 2008.2.18.><개정 12.03.23, 16.06.01.>

②삭제<개정 2011.12.30>

제39조의3(신규채용 등) <삭 제> <2008.2.18>

제39조의4(종전규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되어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의 임용) ①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 교원은 근무기간이 종료되어(종전의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된 경우의 임용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관 제3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2.03.23>

1. 교 수 : 정년

2. 부 교수 : 6 년

3. 조 교수 : 6 년<개정 16.08.01>

4. 삭제<2012.07.22>

5. 삭제<개정 2011.12.30.>

②이사장은 근무기간이 종료되는 대학교 교원의 신청에 따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한다.<개정 2012.03.23>

③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관한 기준과 세부적인 절차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④(삭제)

⑤(삭제)

⑥학교의 장은 임용된 교원을 대상으로 각 호에 대한 업적을 평가한다.<개정 08.02.18, 12.03.23, 16.06.01.>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본호신설 2008.2.18>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본호신설 2008.2.18>

3. 건학이념의 구현 및 학교발전에의 기여도 <본호신설 2008.2.18>

4.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본호신설 2008.2.18>

⑦이사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업적평가 결과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학교의 장은 업적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개정 2012.03.23., 16.06.01.>

제39조의5(특별채용)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이사장은 기간을 정하여 특별채용 할 수 있다.<개정 2008.2.18>

1. 교원이 제40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임용 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 타 우수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을 본 대학교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개정 2012.0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만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제2관 신분보장

제40조(휴직의 사유)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

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08.2.18., 09.2.27., 21.01.29., 23.02.23.>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고용될 때
7. 자녀(만8세 이하,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학과의 개폐(계열 및 전공분야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퇴직 및 취업준비를 하고자 할 때
12.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14.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②재직 중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학생지도에 능숙하며, 기타 여러모로 장래성이 있고 영구 근속성이 있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외국 시찰 및 일정한 기간 연구생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휴직의 기간) ①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18>

1. 제4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4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0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0조 제1항 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40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0조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9. 제40조 제1항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0조 제1항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11. 제40조 제2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외국시찰 및 연구생활 기간으로 한다.

②휴직기간은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0조 제2호, 제4호,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본향신설 2008.2.18>

제42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40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④제41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그 만료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제43조(휴직교원의 처우) ①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제4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2.18>

③제40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동안 봉급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

④제40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같은 항 제1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신설 21.01.29.>

제44조(직위해제) ①<삭제 16.06.01.>

②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본호 신설 16.06.0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6.06.0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16.06.01.>

⑤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대기 기간을 명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 제3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16.06.01.>

⑧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4조의2(면직의 사유) ①사립학교법 제58조에 의하여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법인정관 제56조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2.18]

제45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8.2.18>

제46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제와 정원의 개폐, 학급, 학과의 개폐(전공분야 개폐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폐직되거나 과원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18>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삭 제><2008.2.18>

제47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한다. 단, 학교의 장은 예외할 수 있다.<개정 12.03.23., 16.06.01.>

제47조의2(정년보장교원의 심사) ①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당해 조문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2.18>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정년보장교원 임용을 위한 심사기준 등은 따로 정한다.

③위원회의 규정과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개정 07.3.29., 12.03.23, 16.06.01.>

제47조의3(정년보장교원의 정수) 정년까지 임용하는 교원의 정수는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한다.

제47조의4(임용기간의 계산) 임용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 3을 준용한다.

제47조의5(명예퇴직) ①교원 중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이 1년 이상 10년 이내인 자가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2.18>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대한 실시시기,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47조의6(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8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대학교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대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07.3.29, 08.2.18, 12.03.23, 16.06.01.>

제49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2.18>

1. 학교의 장이 교원을 임면 제청하고자할 때의 임면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99.08.21., 12.03.23, 16.06.01.>
2. 학교의 장이 부총장 및 각 행정부서의 장 또는 계열대학장의 보직 임면 제청 시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12.03.23., 14.05.01., 14.10.01, 16.06.01.>
3.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12.03.23., 16.06.01.>
4. 정관 제39조의 4의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

②인사위원회가 제1항의 임명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정관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은 제39조의 2의 제1항 제4호를, 정관 제3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은 정관 제39조의 4의 제6항의 규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0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

한다. <개정 08.2.18, 12.03.23, 16.06.01., 21.01.29.>

②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18.>

제51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단서 삭제><개정 08.2.18, 12.03.23, 16.06.01.>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2조(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08.02.18, 12.03.23, 16.06.01.>

②인사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3조(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8.02.18, 12.03.23, 16.06.01.>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4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대학교의 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개정 08.02.18, 12.03.23, 16.06.01.>

제55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6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으로 조직한다.<개정 21.01.29., 22.08.12.>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07.3.29., 16.12.01.>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2.02.03., 22.08.12.>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신설 16.12.01.>

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한다.<개정 22.02.03.>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

람은 할 수 없다.

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본호신설 22.02.03.>

④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및 회의 참석자 전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16.12.01.>

제56조의1(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16.12.01.>

②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16.12.0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6조 제4항에 따른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7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8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9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9조의2(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 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9조의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6.12.01.>

1. 징계협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
3. 징계사유서와 징계요구자의 의견서
4. 징계협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
5. 징계협의자의 이력서
6. 근무성적표

제60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16.12.01.>

제61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2.18>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개정 22.02.03.>

③ 임면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고,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재심의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면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6.12.01.>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2.02.03.>

제62조(징계의결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2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07.03.29, 16.06.01. 18.06.29.>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63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4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재심위원회

제65조 내지 제78조 삭제

제4절 사무직원

제79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 (이하“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4.03.01.>

1. 삭제<2021.01.29.>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4.03.01>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0조(임면)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보직, 면직, 해임 및 파면 (이하“임면”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및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18>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개정/단서삭제 2007.3.29)

제80조의2(직원인사평정위원회 구성) <삭 제> <2008.2.18>

제81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인사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04.30.>

제82조(보수) ①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18>

② 삭 제 <2021.6.15>

제83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4조(정년) 일반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를 준용한다.

제85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법인 사무직원의 징계처분은 이사장이 시행하고,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08.02.18., 17.11.24>

②대학교 사무직원의 징계처분은 총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장이 시행하고,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17.11.24>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86조(법인사무조직)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중요한 정책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09.02.27, 09.08.14., 13.09.26., 15.12.01, 16.12.06>

②삭제 <개정 2008.2.18. 2009. 2.27, 2009.8.14, 2011.12.30, 2013.09.26>

③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09.02.27, 17.11.24>

④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항신설 2008.2.18>

제2절 대학교<개정 2012.03.23>

제87조(학교의 장 등) ①대학교에 학교의 장을 둔다. <개정 09.02.27, 12.03.23, 16.06.01.>

②학교의 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09.02.27, 12.03.23, 16.06.01.>

③<삭 제> <2008.2.18>

④<삭 제> <2008.2.18>

제87조의2(부총장 등) 삭제<2013.09.26>

제88조(하부조직) ①대학교에는 대학본부 및 부속기관을 두며, 그 세부직제는 대학직제

규정으로 정한다.<일부삭제><개정 08.2.18, 09.8.14., 10.11.22., 12.03.23., 13.09.26., 14.03.01. 15.12.01., 16.01.01., 19.09.20., 21.01.29.>

②부총장 및 각 단·처의 장은 교원 또는 동등 이상의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자로 임명한다.<일부삭제><개정 08.2.18, 09.8.14., 10.11.22., 12.03.23., 13.09.26., 14.03.01., 14.10.01., 15.12.01., 16.01.01., 16.06.01., 21.01.29.>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09.02.27, 12.03.23, 16.06.01.>

제89조(부속시설) ①삭제<21.01.29.>

②삭제<21.01.29.>

③<삭제> <2009. 2.27>

④삭제<21.01.29.>

제90조(도서관) ①삭제<본항신설 2008.2.18.><개정 2012.03.23.><삭제 2014.03.01.>

②<개정 2007.3.29, 2008.2.18, 삭제 2009.8.14>

③삭제<개정 2009. 2.27>,<삭제 2014.03.01.>

제90조의2(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학교에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개정 2012.03.23>

②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고 학교기업에는 학교기업운영책임자를 둔다. <개정 2009. 2.27>

③ <본항신설 2009. 2.27, 삭제 2009.8.14>

④학교기업운영책임자는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09.02.27, 09.8.14, 12.03.23, 16.06.01.>

⑤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본항신설 09.02.27><개정 12.03.23, 16.06.01.>

[본조신설 2008.2.18.]

제3절 유치원

제91조(원장 등) ①유치원에 원장과 원감 각각1인을 둔다

②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한다.<개정 2008.2.18>

③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장리하며 원아를 보육하고 원장 유고시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유치원에 서무과를 두며 과장은 주사보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8.14>

⑤이외 별도의 사항은 대전보건대학교 부속 유치원 규칙을 따른다.<개정 24.01.09.>

제4절 정원

제92조(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 별표3

과 같다.

제8장 보칙

제93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지에 공고한다.

제94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95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임 기	주 소
이사장	이 기 석	1923. 1. 17.	4년	대전직할시 동구 중동 26-16
이 사	정 수 용	1925. 7. 15.	4년	대전직할시 중구 선화동 411-4
“	노 병 권	1919. 4. 25.	4년	대전직할시 중구 문화동 395-10
“	배 영 준	1924. 10. 10.	4년	대전직할시 중구 선화동 192-12
“	김 재 설	1921. 10. 19.	2년	대전직할시 중구 석교동 54-16
“	염 정 훈	1921. 8. 19.	2년	대전직할시 중구 석교동 54-3
“	이 기 용	1936. 5. 15.	2년	대전직할시 동구 중동 27
감 사	이 규 택	1917. 11. 14.	2년	대전직할시 중구 용두동 18
감 사	이 은 용	1930. 4. 24.	1년	대전직할시 중구 도마동 140-2

제96조(행동강령) ① 학교법인 청운학원 소속 임원 및 구성원은 관련 법령과 ‘학교법인 청운학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3.02.23.>

② 삭제 <23.02.23.>

[본조신설 22.08.12.]

부 칙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1977. 7. 30.)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79년 2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79년 9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11.02.>

②(학교의 장 임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 ⑥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전에 임명된 학교의 장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4조 ⑦항에 따라 적용한다.

②(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 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전문대학 학장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의한다.

⑤(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이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 시 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②(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③(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직 중인 교원은 각각 그 임용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전보건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 은 정관에 의하여 “대전보건대학”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99.8. 개정)
- ②(보수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에서 정한 보수규정은 2000년 3월부터 적용한다. (99.8.

개정)

③(승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의 승진 대상자는 교원업적평가 및 직원 근무평가 규정과 이전 승진평가 규정을 함께 적용하여 평정한다. (99.8. 개정)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 제39조의 3 및 제39조의 4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9조의 4의 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채용심사원에 관한 적용례) 정관 제39조의3 제4항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실시하는 대학교원의 채용심사부터 적용한다.

③(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 정관 제39조의3 제5항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공개되는 신규채용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본조신설 2007.3.29>

② (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0조의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원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3.29>

③(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정관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본조

신설 2007.3.29>

④(유치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정관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유치원장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07.3.29>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2008.2.18>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2008.9.25>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2009.2.27>

②(대학의 장 명칭변경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의 장(학장)은 이 정관에 의한 총장으로 본다. <신설 2009.2.27>

③(대학 제규정의 개정) 이 정관에 의한 대학 제규정상'학장'의 명칭은 각각 '총장'으로 변경하며, 직제(정원)에 관한 부분은 개정된 것으로 한다. <신설 2009.2.27>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2009.8.14>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2010.11.22>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기능직 관련 변경 정관은 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하여 시행한다.<신설 2011.12.30>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기능직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기능원 및 기능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1.12.30>

③(대학 제규정의 개정) 이 정관에 의해서 대학 제규정상 '기능직'의 명칭은 '기능원 및 기능장'으로 개정된 것으로 한다.<신설 2011.12.30>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2.03.23>
- ②(경과조치) 이 정관에 의하여 대학 제규정상 ‘대학’의 명칭은 ‘대학교’로 개정된 것으로 한다.<개정 2012.03.23>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2.07.22>
- ②(경과조치) 종전의 정관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정관에 따른 조교수로 보며, 전임강사 근무 경력은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개정 2012.07.22>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9월 0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2.09.01>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3.04.26>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3.09.26>
- ②(경과조치) 종전의 정관에 따른 조직 및 구성원에 관한 사항은 이 정관에 따라 2013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3.09.26.>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4.03.01.>
- ②(도서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의 도서관은 부속시설 이므로 제90조 도서관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제89조(부속시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속시설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 제규정에 위임한다.<개정 2014.03.01.>
- ③(직종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정관에 따른 대학교에 두는 사무직원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이 정관에 따라 2014년 03월 01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보며, 직종으로는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을 두고(기능직 통·폐합) 직군으로는 일반직 직종에 행정직·기술직 직군을 둔다. 직렬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 제규정에 위임한다.<개정 2014.03.01.>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4.05.01.>
- ②(정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이전의 대학교에 두는 사무직원 정원은 이 정관에 따라 2014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4.05.01.>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4.10.01>
- ②(보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에서 개정된 제82조 ②항(보수)은 2014년 10월 01일부터 신규 임용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개정 2014.10.01.>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08월 04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5.08.04>
- ②(경과조치) 종전의 정관에 따른 수익사업소(청운빌딩)의 명칭 및 주소는 이 정관에 따라 수익사업소 매각일로 소급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5.08.04.>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5.12.01.>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6.01.01.>
- ②(경과조치) 종전의 정관에 따른 제88조(하부조직)은 이 정관에 따라 개정일로 소급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6.01.01.>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2]대학교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의 경우 2016년 03월 01일부터 적용한다.<개정 2016.06.01.>
- ②(총장 명칭 변경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의 '총장'의 명칭은 '학교의 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06.01.>
- ③(직위해제 및 징계사유의 시효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이전의 제44조(직위해제)와 제62조의2(징계사유의 시효)의 경우 상위 법령인 사립학교법 제58조의 2(직위의 해제), 제66조의 4(징계사유의 시효)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2016.06.01.>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경우 2016년 11월 01일 부터 시행한다.<개정 2016.08.01.>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하되, 제56조, 제56조의1, 제59조의3, 제60조, 제61조는 상위법령(사립학교법) 개정 시점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6.12.01.>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01월 25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7.01.25.>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개정된 제40조1항7호는 상위법령(사립학교법) 개정 시점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11.24.>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06월 18일부터 시행하되 개정된 제62조의2는 상위법령(사립학교법)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06.29.>

②(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11.02.>

②(학교의 장 임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 ⑥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전에 임명된 학교의 장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4조 ⑦항에 따라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0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07.18.>

②(정년트랙 전임교원이외의 교원에 관한 적용례) 정년트랙 전임교원 이외의 교원의 임용계약 기간은 제39조의2 ①항 1호 마목에 따라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0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09.20.>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0.06.01.>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0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01.29.>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04.30.>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0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06.15.>

②(경과조치) 이 정관에서 삭제된 제82조 ②항을 적용받은 직원은 호봉연봉제로 소급하여 전환한다. <개정 2021.06.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0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개정규정은 2022년 02월 11일에 시행하고 제12조의3제2항, 제21조제8항 각 호, 제56조제3항, 제61조제2항 개정규정은 2022년 3월25일 시행한다.

제2조(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①개정 정관 시행 이후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위촉할 당시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교원, 직원 또는 재학생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구성은 제2항에 따라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제21조제8항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0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 시행일을 준용하여 소급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0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06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01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3항의 경우 2024년 3월 1일 이후 제소된 사건에 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0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3항의 경우 2024년 3월 1일 이후 제소된 사건에 한한다.

[별표1] 법인사무직원정원<개정 2008.2.18., 2009.2.27., 2009.8.14., 2014.03.01.>

법 인 사 무 직 원 정 원

구 분	직 급		인 원	비 고
일 반 직	3 급	부이사관	1 인	
	4 급	서기관	1 인	
	5 급	사무관	1 인	
	6 급	주 사	1 인	
	7 급	주사보	1 인	
	8 급	서 기	2 인	
	9 급	서기보	2 인	
		소 계	9 인	
계 약 직		-	12 인	
		소 계	12 인	
		총 계	21 인	

[별표2]대학교에 두는 사무직원 정원<개정 08.2.18, 09.2.27, 09.8.14., 11.12.30., 12.03.23., 13.04.26., 14.03.01., 14.05.01., 14.10.01., 16.06.01., 21.01.29>

대학교에 두는 사무직원 정원

구 분	직 급	인 원	비 고
일반직 (행정직군)	3 급	부이사관	2 인
	4 급	서기관	5 인
	5 급	사무관	15 인
	6 급	주 사	12 인
	7 급	주사보	12 인
	8 급	서 기	10 인
	9 급	서기보	9 인
	소 계	68 인	
일반직 (기술직군)	5 급	기술직 사무관	5 인
	6 급	기술직 주 사	5 인
	7 급	기술직 주사보	9 인
	8 급	기술직 서 기	9 인
	9 급	기술직 서기보	11 인
	소 계	39 인	
계약직		계 약 직	90 인
		소 계	90 인
	총 계	197 인	

[별표3]유치원 사무직원 정원<개정 2008.2.18, 2009.2.27., 2009.8.14., 2014.03.01.>

유치원 사무직원 정원

구 분	직 급		인 원	비 고
일 반 직		주 사 보	1 인	
		계	1 인	
		보 조 원	1 인	
		계	1 인	
		총 계	2 인	